

행정기획위원회  
소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 
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소형준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소형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71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1일  
발 의 자 : 소형준, 이용진, 양순임, 김육영,  
정병기, 정기혁, 강수진

## 1. 제안이유

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, 대통령 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, 서울특별시도 서울시 다자녀 지원계획 발표 및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이용료 감면 확대 협조 요청을 시행하였음. 이에 발맞추어 우리구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확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로서 자녀가 2인인 자 및 그 자녀 : 100분의 30 감면 또는 할인 가능(안 제10조제1항 제5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문화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“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: 100분의 50”을 “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: 100분의 50 (다만,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2인인 자 및 그 자녀 : 100분의 30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사용료의 감면 등)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다.  1. ~ 4. (생략)  5.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), [별표 3]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,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(체육관, 축구장·족구장·풋살장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),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<u>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</u> : 100분의 50	제10조(사용료의 감면 등)  ① (현행과 같음)  1. ~ 4. (현행과 같음)  5.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), [별표 3]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,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(체육관, 축구장·족구장·풋살장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 등의 대관에 한함),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<u>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</u> : 100분의 50 ( <u>다만,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2인인 자 및 그 자녀</u> : 100분의 30)
6. ~ 11. (생략)	6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